#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86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정춘생·이수진·김재원

김준형・조 국・차규근

이해민 • 황운하 • 김선민

서왕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

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제38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으로한다.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 3.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4.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 6.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38조(자립지원) ①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 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 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_보호시 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 | 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 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
센터의 장 및 <u>아동복지시설</u>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①(생 략)

<신 설>

| 는 시설도서 대통령령으로 성    |
|--------------------|
| <u>하는 시설</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 ①                  |
| <u>아동복지시설이</u>     |
|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   |
| 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
| 설치・운영) ①           |
|                    |
| <u>아동복지시설</u>      |
| 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   |
| 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
| (현행과 같음)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 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 3.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4.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 6.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아동
- ③ <u>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u>----

-----